



제330회 임시회  
2014. 6. 11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4.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## 4.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4년 6월 2일
- 회부일자 : 2014년 6월 5일

3. 제안이유

- 관련 상위법인 「기초노령연금법」의 폐지와 더불어 「기초연금법」의 시행에 맞추어 조례 제명 및 상위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 : 기초노령연금 → 기초연금  
※ 현행 :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- 상위법 적용 관련 자구 수정(안 제1조)  
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 제2호 → 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 제2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기초노령연금법」이 2014.7.1일자로 폐지, 「기초연금법」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을 적용하여 조례 제명의 자구 수정 및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
- 「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 제명 중 “기초

노령연금” 자구를 “기초연금”으로 수정하여 「충청북도 기초연금  
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,

-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적용 조항을 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 제2호에서 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제2항으로 수정한 것으로 법리적, 내용적 문제 없음.

※ 참고자료 : 기초연금 주요내용 1부.

## 1 기초연금 제도 개요

- (대상자) 만65세 이상이며, 소득·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'1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
  - (선정기준액) 단독가구 87만원, 부부가구 139.2만원 이하인 가구
- (연금액) 월 최대 20만원
  -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%(406만명)에게 20만원 지급
    - \* 지급대상 노인의 95%에게 15만원 이상 지급
  -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(41만명) 노인은 10~20만원 지급
    - \* 국민연금 -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득재분배 부분(A급여)의 크기를 고려하여 연금액 산출
- (재원) 전액 조세 (국비 80%, 지방비 20%)
- 신청방법

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	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
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예정	주소지 읍·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

## 2 기초노령연금(현행)과 기초연금(7월 도입) 비교

	기초노령연금	기초연금
도입 시기	2008년	2014.7월
법적 근거	기초노령연금법('07.4.25)	기초연금법 제정('14.5.2)
대상	전체 노인의 70%	전체 노인의 70%
기준연금액	9.9만원('14년 기준)	20만원('14년 기준)
연금액 산정방식	정액 지급*	국민연금과 연계* (20만원에서 국민연금액 또는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로 감액하는 방식)
대상자별 연금액**	-	· 무연금자 : 20만원 · 국민연금수급자 : 10~20만원

\* 기초연금액 = (20만원 - 2/3\*A급여) + 10만원

\*\* 소득역전방지, 부부감액 적용 시 일부 10만원 미만 수급자 발생

### 3 수급자 규모 및 예산현황

#### ○ 일반현황

(2014. 4월 기준,명)

도내인구(A)		노인인구(B)		노인인구비율(B/A)	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(C)		수급률(C/B)	예산(억원)	
가구	인원	가구	인원		가구	수급자		일반	기초연금
648,047	1,574,548	152,154	224,761	14.3%	12,542	158,792	70.6	35,574	2,259

#### ○ 수급자 예상규모

(단위 : 명)

계(A+B)		자격전환 대상(A)		신규신청자 예상(B)		비고
가구	인원	가구	인원	가구	인원	
12,918	163,555	12,542	158,792	376	4,763	수급률 72.8%

#### ○ 기초연금 예산현황

(단위 :백만원)

구분	2013년	2014년					2015년	2016년	
		합계	상반기	하반기	하반기 소요액	부족 예상액			
수급인구	157,771	159,227		163,555			176,818	185,758	
재정 소요	총액	169,963	268,719	95,435	173,284	194,639	21,355	413,315	435,393
	국비(80%)	135,970	215,067	76,440	138,627	155,712	17,085	330,652	348,314
	도비(4%)	6,799	10,730	3,799	6,931	7,785	854	16,533	17,416
	시군비(16%)	27,194	42,922	15,196	27,726	31,142	3,416	66,130	69,663

※ '14 하반기 소요예산 : 1,946억원 (도비 8.5억원 정도 부족 예상)

산출 :  $157\text{천명} \times 20\text{만원} + 4\text{천명} \times 17\text{만원} + 3\text{천명} \times 12\text{만원} = 324.4\text{억원 (월)}$   
 (20만원 수급자) (19~15만원수급자) (14~10만원 수급자)